

- 판매보수 인하(CDSC) 대상 펀드 신탁계약서 주요 변경 내용

1. 슈로더 이머징 위너스 밸런스드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혼합)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p>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p> | <p>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A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2. 종류 C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p> <p>3. 종류 F 수익증권: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내지 제18호는 제외), 10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변액보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4. 종류 I 수익증권: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개인 고객, 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의 법인 고객</p> | <p>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A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2. 종류 C1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3. <u>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u> 4. <u>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u> 5. <u>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u> 6. <u>종류 C5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u> 7. 종류 F 수익증권: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내지 제18호는 제외), 10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변액보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8. 종류 I 수익증권: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개인 고객, 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의 법인 고객</p> |
| <p>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 <p>①생략 1. 종류 A 수익증권 2. <u>종류 C 수익증권</u></p> <p>3. 종류 F 수익증권 4. 종류 I 수익증권</p> | <p>①생략 1. 종류 A 수익증권 2. <u>종류 C1 수익증권</u> 3. <u>종류 C2 수익증권</u> 4. <u>종류 C3 수익증권</u> 5. <u>종류 C4 수익증권</u> 6. <u>종류 C5 수익증권</u> 7. 종류 F 수익증권 8. 종류 I 수익증권</p> |
| <p>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p> | <p><조항 신설></p> |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한다. 1.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종류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한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 증권외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할 수 있다.</p> |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 <p>⑤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p> <p>1.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p> <p>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
| 제 39 조(보수) | <p>①~③생략</p> <p>2. <u>종류 C 수익증권</u></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85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50%<개정 2010년 5월 3일></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조항 신설></p> | <p>①~③생략</p> <p>2. <u>종류 C1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50%<개정 2010년 5월 3일></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3. <u>종류 C2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4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4. <u>종류 C3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3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5. <u>종류 C4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2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6. <u>종류 C5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1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
| 제 41 조 환매수수료 | <p>①종류 C 수익증권, 종류 F 수익증권 및 종류 I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 <p>①종류 C1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 종류 F 수익증권 및 종류 I 수익증권을 환매하는 경우 판매회사(제 26 조제 2 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업자 또는 신탁업자를 말한다)는 환매를 청구한 수익자가 그 수익증권을 보유한 기간(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환매시 적용되는 당해 종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별로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여 환매대금 지급일의 익영업일까지 투자신탁재산에 편입한다.</p> |
| 제 45 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p>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p> <p>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p> <p>3. <u>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u></p> | <p>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p> <p>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p> <p>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p> |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p>중간 생략</p> <p>④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 <p>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설정한 후 1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년이 지난 후 1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p> <p>중간 생략</p> <p>④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
| 부칙 | <신설> | <p>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1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조치)</p> <p>①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에 제 3 조제 3 항의 종류 C1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 보유기간에 따라 일괄하여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한다.</p> <p>②제 1 항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 이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문 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 조항에 따라 전환한다.</p> <p>③제 1 항에 따라 전환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

2. 슈로더 브릭스 증권 자투자신탁 E(주식)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제 2 조(용어의 정의) | 1. ~ 16. 생략 신설 | 1. ~ 16. 생략 17. “종류형”이라 함은 판매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르거나 판매수수료가 다른 여러 종류의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하는 집합투자기구를 말한다. |
| 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 | ① 생략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4. 생략 <신설> | ① 생략 ②이 투자신탁은 다음 각 호의 형태를 갖는 집합투자기구로 한다. 1.~4. 생략 5. 종류형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C1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2.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 3.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 4.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 5. 종류 C5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 |
| 제 6 조(신탁원본의 가액 및 수익증권의 총좌수)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 30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4조좌로 한다. |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의 원본의 가액은 1좌당 1원을 기준으로 제 30 조에서 정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을 적용하며, 설정할 수 있는 <u>수종의</u> 수익증권의 총 좌수는 4조좌로 한다. |
| 제 7 조(추가신탁) |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집합투자업자는 제 6 조의 규정에 의한 <u>수종의</u> 수익증권의 총좌수의 범위 내에서 추가설정을 할 수 있으며, 추가설정의 규모 및 시기 등은 집합투자업자가 결정하되, 관련 절차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 제 8 조(신탁금의 납입) | ①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①생략 ②집합투자업자는 제 7 조의 규정에 따라 이 투자신탁을 추가로 설정하는 때에는 추가투자신탁금을 현금 또는 수표로 신탁업자에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추가투자신탁금은 추가설정하는 날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u> 기준가격에 추가로 설정하는 수익증권좌수를 곱한 금액을 1,000으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 제 9 조(수익권의 분할) |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 ①이 투자신탁의 수익권은 <u>수익증권의 종류별</u> 1좌의 단위로 균등하게 분할하며, 수익증권으로 표시한다. ②이 투자신탁의 수익자는 투자신탁원본의 상환 및 투자신탁이익의 분배 등에 관하여 <u>수익증권의 종류별로</u> 수익증권의 좌수에 따라 균등한 권리를 가지며, 설정일이 다른 경우에도 그 권리의 내용에는 차이가 없다. |
| 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 | ①생략 <신설> ②~④ 생략 <신설> | ①생략 1. 종류 C1 수익증권 2. 종류 C2 수익증권 3. 종류 C3 수익증권 4. 종류 C4 수익증권 5. 종류 C5 수익증권 ②~④ 생략 ⑤제 1항 각 호의 수익증권 이외의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을 추가하거나 수익증권의 종류 변경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 43조 제 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제 25 조(판매가격) | <p>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제 6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 <p>①수익증권의 판매가격은 투자자가 이 수익증권의 취득을 위하여 판매회사에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 3 영업일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으로 하며, 이 경우 영업일의 산정은 제 2 조제 6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의 영업일(단, 토요일은 제외한다)로 한다. 다만,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으로 한다.</p> <p>②제 1 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투자자가 17 시 경과 후에 자금을 납입한 경우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판매가격</u>은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부터 제 4 영업일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으로 한다.</p> |
| 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 | <조항 신설> |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종류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p>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한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p> <p>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p> <p>④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할 수 있다.</p> <p>⑤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 27 조(환매가격 및 환매방법) | <p>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 4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5 영업일)에 공고되는 기준가격으로 한다.</p> | <p>①수익증권의 환매가격은 수익자가 판매회사에 환매를 청구한 날(실질수익자의 경우 제 26 조제 4 항의 규정에 따라 판매회사에 환매청구를 요구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제 4 영업일(17 시 경과 후에 환매청구시 제 5 영업일)에 공고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으로 한다.</p> |
| 제 30 조(기준가격 산정 및 공고) |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을 산정한다. 기준가격은 제 2 항의 기준가격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 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 <p>①집합투자업자는 제 29 조의 규정에 따른 투자신탁재산의 평가결과에 따라 기준가격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을 산정한다. 기준가격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은 제 2 항의 기준가격 <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의 공고·게시일 전날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이라 한다)을 그 공고·게시일 전날의 수익증권 총좌수로 나누어 산정하며,</p> |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좌당 1,000 원으로 공고한다.</p> <p>③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p> | <p>1,000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 사 5 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한다.</p> <p>②집합투자업자는 제 1 항에 따라 산정된 기준가격(모투자신탁의 기준가격 포함)을 매일 공고·게시하되,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날[<u>신규 종류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날 또는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이 전부 환매된 후 다시 발행하는 날</u>]의 기준가격은 1 좌를 1 원으로 하여 1,000 좌당 1,000 원으로 공고한다.</p> <p>③집합투자업자는 기준가격[<u>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u>] 산정업무를 일반사무관리회사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수수료는 이 투자신탁재산에서 부담한다.</p> |
| 제 33 조(이익분배) |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 제 33 조(이익분배) ①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에 따라 발생한 당해 종류 수익증권별 이익금을 투자신탁회계기간 종료일 익영업일에 분배한다. 다만, 법 제 242 조에 따른 이익금이 0 보다 적은 경우에 분배를 유보한다. |
| 제 37 조(수익자총회) | <p>①~② 생략 <신설></p> <p><신설></p> | <p>①~② 생략</p> <p>③제 1 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수익자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경우로서 특정 종류의 수익증권 수익자에 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때에는 그 종류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p> <p>④~⑩ 생략</p> <p>⑩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총회는 제 4 항, 제 6 항, 8 항 및 제 9 항의 규정을 준용함에 있어 “발행된 수익증권의 총좌수”는 “발행된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총좌수”로 본다.</p> |
| 제 39 조(보수) | <p>①~② 생략</p> <p>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p> <p>1.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p> <p>2. 판매회사보수율 : 연 1.50%<개정 2010 년 5 월 3 일></p> <p>3.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p> <p>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p> | <p>①~② 생략</p> <p>③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투자신탁보수는 <u>당해 종류 수익증권별로 다음 각 호의 보수율에 당해 종류 수익증권에 해당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연평균가액(매일의 투자신탁 순자산총액을 연간 누적하여 합한 금액을 연간 일수로 나눈 금액)에 보수계산기간의 일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u></p> <p>1. 종류 C1 수익증권<개정 2011 년 1 월 10 일></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5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p> <p>2. 종류 C2 수익증권<신설 2011 년 1 월 10 일></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4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p> <p>3. 종류 C3 수익증권<신설 2011 년 1 월 10 일></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3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p> <p>4. 종류 C4 수익증권<신설 2011 년 1 월 10 일></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2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p> <p>5. 종류 C5 수익증권<신설 2011 년 1 월 10 일></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 연 1.1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 연 0.05%</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 연 0.02%</p> |
| 제 42 조(기타 운용비용 등) |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신설> | ①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체 수익자의 부담으로 하며, 집합투자업자의 지시에 따라 신탁업자가 투자신탁재산에서 인출하여 지급한다. <u>다만,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u> |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p>②생략 <신설></p> | <p>대하여만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만 비용을 부담시켜야 한다. ②생략 ③제 1 항 단서규정에서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게 부담시키는 비용”이라 함은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투자신탁재산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비용을 말한다. 1. 특정 종류 수익증권의 수익자로 구성되는 수익자총회 관련비용</p> |
| <p>제 45 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p> | <p>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p> <p>중간 생략</p> <p>④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 <p>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p> <p>중간 생략</p> <p>④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
| <p>부칙</p> | <p><신설></p> | <p>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1 년 1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에 제 3 조제 3 항의 종류 C1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 보유기간에 따라 일괄하여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한다. ②제 1 항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 이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문 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 조항에 따라 전환한다. ③제 1 항에 따라 전환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

3.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 A(주식)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p>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p> | <p>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A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2. 종류 C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p> <p>3. 종류 C-e 수익증권: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 한함 4. 종류 F 수익증권: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내지 제18호는 제외), 10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변액보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5. 종류 I 수익증권: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개인 고객, 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의 법인 고객</p> | <p>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A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2. <u>종류 C1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u> 3. <u>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u> 4. <u>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u> 5. <u>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u> 6. <u>종류 C5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u> 7. 종류 C-e 수익증권: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 한함 8. 종류 F 수익증권: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내지 제18호는 제외), 10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WRAP ACCOUNT, 특정금전신탁, 변액보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9. 종류 I 수익증권: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개인 고객, 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의 법인 고객</p> |
| <p>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 <p>①생략 1. 종류 A 수익증권 2. <u>종류 C 수익증권</u></p> <p>3. 종류 C-e 수익증권 4. 종류 F 수익증권 5. 종류 I 수익증권</p> | <p>①생략 1. 종류 A 수익증권 2. <u>종류 C1 수익증권</u> 3. <u>종류 C2 수익증권</u> 4. <u>종류 C3 수익증권</u> 5. <u>종류 C4 수익증권</u> 6. <u>종류 C5 수익증권</u> 7. 종류 C-e 수익증권 8. 종류 F 수익증권 9. 종류 I 수익증권</p> |
| <p>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p> | <p><조항 신설></p> |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한다. 1.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종류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한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p> |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 <p>④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 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할 수 있다.</p> <p>⑤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 제 39 조(보수) | <p>①~③생략</p> <p>2. <u>종류 C 수익증권</u></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50%<개정 2010년 5월 3일></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조항 신설></p> <p>3. 종류 C-e 수익증권</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500%<개정 2010년 5월 3일></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이하 생략></p> | <p>①~③생략</p> <p>2. <u>종류 C1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50%<개정 2010년 5월 3일></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3. <u>종류 C2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4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4. <u>종류 C3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3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5. <u>종류 C4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2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6. <u>종류 C5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10%</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생략></p> <p>8. <u>종류 C-e 수익증권</u></p> <p>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p> <p>나. 판매회사보수율: <개정 2010년 5월 3일><개정 2011년1월10일></p> <p>a. 연 1.400%: 2011년 1월 10일~2012년 1월 9일</p> <p>b. 연 1.300%: 2012년 1월 10일~2013년 1월 9일</p> <p>c. 연 1.190%: 2013년 1월 10일~2014년 1월 9일</p> <p>d. 연 1.090%: 2014년 1월 10일 이후</p> <p>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p> <p>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이하 생략></p> |
| 제 41 조 환매수수료 | <p>①~② 생략</p> <p>1. <u>종류 A 수익증권</u> - 30일미만: 이익금의 10%</p> <p>2. <u>종류 C 수익증권</u> - 90일미만: 이익금의 70%</p> | <p>①~② 생략</p> <p>1. <u>종류 A 수익증권</u> -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p> <p>2. <u>종류 C1 수익증권</u>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p> <p>3. <u>종류 C2 수익증권</u>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p> |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3. 종류 C-e 수익증권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4. 종류 F 수익증권 - 90일미만: 이익금의 70% 5. 종류 I 수익증권 - 90 일미만: 이익금의 70% | 4. 종류 C3 수익증권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5. 종류 C4 수익증권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6. 종류 C5 수익증권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7. 종류 C-e 수익증권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8. 종류 F 수익증권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9. 종류 I 수익증권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
| 제 45 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 | <p>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p> <p>중간 생략</p> <p>④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 <p>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 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 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 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p> <p>중간 생략</p> <p>④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
| 부칙 | <p><신설></p> | <p>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1 년 1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에 제 3 조제 3 항의 종류 C1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 보유기간에 따라 일괄하여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한다. ②제 1 항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 이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문 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 조항에 따라 전환한다. ③제 1 항에 따라 전환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

4. 슈로더 이머징 원자재 증권 자투자신탁 B(주식)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p>제 3 조(집합투자기구의 명칭 등)</p> | <p>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A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2. 종류 C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없음</p> <p>3. 종류 C-e 수익증권: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 한함 4. 종류 F 수익증권: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내지 제18호는 제외), 10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WRAP ACCOUNT, 특정급전신탁, 변액보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5. 종류 I 수익증권: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개인 고객, 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의 법인 고객</p> | <p>①~② 생략 ③이 투자신탁은 종류형 집합투자기구로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종류 A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2. 종류 C1 수익증권: 투자자 자격에 제한 없음 3. <u>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u> 4. <u>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u> 5. <u>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u> 6. <u>종류 C5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자</u> 7. 종류 C-e 수익증권: 온라인을 통해 가입한 고객에 한함 8. 종류 F 수익증권: 국가재정법에 따른 기금, 법제9조제5항에 따른 전문투자자(단, 법 제9조제5항제4호, 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제15호 내지 제18호는 제외), 100억원 이상의 개인 고객, 500억원 이상의 법인 고객, WRAP ACCOUNT, 특정급전신탁, 변액보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라 투자하는 기관투자자 9. 종류 I 수익증권: 50억원 이상~100억원 미만의 개인 고객, 50억원 이상 ~ 500억원 미만의 법인 고객</p> |
| <p>제 10 조(수익증권의 발행 및 예탁)</p> | <p>①생략 1. 종류 A 수익증권 2. <u>종류 C 수익증권</u> 3. 종류 C-e 수익증권 4. 종류 F 수익증권 5. 종류 I 수익증권</p> | <p>①생략 1. 종류 A 수익증권 2. <u>종류 C1 수익증권</u> 3. <u>종류 C2 수익증권</u> 4. <u>종류 C3 수익증권</u> 5. <u>종류 C4 수익증권</u> 6. <u>종류 C5 수익증권</u> 7. 종류 C-e 수익증권 8. 종류 F 수익증권 9. 종류 I 수익증권</p> |
| <p>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p> | <p><조항 신설></p> | <p>① 집합투자업자는 수익자의 전환청구와 관계없이 수익증권의 보유기간(당해 수익증권의 매수일 또는 최초 취득일을 기산일로 하여 다른 종류 수익증권으로 전환하기 위해 전환시 적용되는 당해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일까지를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종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한다. 다만, 수익자가 최초로 매입하는 수익증권은 종류 C1 수익증권에 한한다. 1. 종류 C1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2 수익증권으로 전환 2. 종류 C2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3 수익증권으로 전환 3. 종류 C3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4 수익증권으로 전환 4. 종류 C4 수익증권의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전환 ②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는 위의 각 해당 전환일에 전환처리한다. 다만, 전환일이 영업일이 아닌 경우에는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한다. ③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전환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기준가격은 해당 전환일의 종류 수익 증권의 기준가격으로 한다. ④ 제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익자의</p> |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 <p>환매청구에 따른 환매절차가 진행중인 경우에는 당해 환매청구에 대한 환매대금지급일의 익영업일에 전환처리할 수 있다.</p> <p>⑤ 제 41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수익증권 환매에 따른 환매수수료를 징구하지 아니한다.</p> <p>1. 제 1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증권의 전환을 위하여 환매청구하는 경우 2. 수익증권을 전환한 후 환매청구하는 경우. 다만, 전환 후 추가 납입분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p> |
| 제 39 조(보수) | <p>①~③생략</p> <p>2. <u>종류 C 수익증권</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50% <개정 2010년 5월 3일>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조항 신설></p> <p>3. <u>종류 C-e 수익증권</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500% <개정 2010년 5월 3일>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이하 생략></p> | <p>①~③생략</p> <p>2. <u>종류 C1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50% <개정 2010년 5월 3일>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3. <u>종류 C2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4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4. <u>종류 C3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3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5. <u>종류 C4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2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6. <u>종류 C5 수익증권<개정 2011년1월10일></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연 1.10%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생략></p> <p>8. <u>종류 C-e 수익증권</u> 가. 집합투자업자보수율: 연 0.90% 나. 판매회사보수율: <개정 2010년 5월 3일> <개정 2011년1월10일> a. 연 1.400%: 2011년 1월 10일~2012년 1월 9일 b. 연 1.300%: 2012년 1월 10일~2013년 1월 9일 c. 연 1.190%: 2013년 1월 10일~2014년 1월 9일 d. 연 1.090%: 2014년 1월 10일 이후 다. 신탁업자보수율: 연 0.06% 라.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율: 연 0.02%</p> <p><이하 생략></p> |
| 제 41 조 환매수수료 | <p>①~② 생략</p> <p>1. <u>종류 A 수익증권</u> - 30일미만: 이익금의 10% 2. <u>종류 C 수익증권</u> - 90일미만: 이익금의 70%</p> | <p>①~② 생략</p> <p>1. <u>종류 A 수익증권</u> - 30 일 미만: 이익금의 10% 2. <u>종류 C1 수익증권</u>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3. <u>종류 C2 수익증권</u>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 4. <u>종류 C3 수익증권</u>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p> |

| 항 목 | 정 정 전 | 정 정 후 |
|---|---|--|
| | <p>3. 종류 C-e 수익증권 - 90일미만: 이익금의 70%</p> <p>4. 종류 F 수익증권 - 90일미만: 이익금의 70%</p> <p>5. 종류 I 수익증권 - 90 일미만: 이익금의 70%</p> | <p>5. 종류 C4 수익증권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p> <p>6. 종류 C5 수익증권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p> <p>7. 종류 C-e 수익증권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p> <p>8. 종류 F 수익증권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p> <p>9. 종류 I 수익증권 - 90 일 미만: 이익금의 70%</p> |
| <p>제 45 조 (집합투자기구의 해지)</p> | <p>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p> <p>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p> <p>3.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에 미달하는 경우</p> <p>중간 생략</p> <p>④제 1 항제 2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 <p>①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 투자신탁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1. 수익자 전원이 동의한 경우</p> <p>2. 수익증권 전부에 대한 환매의 청구를 받아 신탁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p> <p>3. 투자신탁(존속하는 동안 투자금을 추가로 모집할 수 있는 투자신탁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설정한 후 1 년이 되는 날에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p> <p>4. 투자신탁을 설정하고 1 년이 지난 후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50 억원 미만인 경우</p> <p>중간 생략</p> <p>④제 1 항제 3 호 및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업자는 해지사유, 해지일자, 상환금 등의 지급방법 및 기타 해지관련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거나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p> |
| <p>부칙</p> | <p><신설></p> | <p>제 1 조(시행일) 이 신탁계약은 2011 년 1 월 10 일부터 시행한다.</p> <p>제 2 조(기존 수익자에 대한 경과조치)</p> <p>①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 조항에도 불구하고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에 제 3 조제 3 항의 종류 C1 수익증권은 당해 수익증권의 최초 매수일을 기산일로 하여 당해 수익증권의 총 보유기간에 따라 일괄하여 종류 C2 수익증권, 종류 C3 수익증권, 종류 C4 수익증권, 종류 C5 수익증권으로 자동 전환한다.</p> <p>②제 1 항에 따라 전환한 수익증권을 이 신탁계약의 시행일 이후 다른 종류의 수익증권으로 자동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본문 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 조항에 따라 전환한다.</p> <p>③제 1 항에 따라 전환하는 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제 25 조의 3(수익증권의 전환) 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